

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

의안 번호	1441
----------	------

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
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3. 12. 1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
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1441호, **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회의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3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'예치금 회수' 수입금액 증가(14,553백만원)에 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이 증액되어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

○ 2023년 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/세부사업		당초(A)*	변경(B)	증감(B-A) (증감률)
합 계		36,832	51,385	14,553
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		5,470	5,470	-
	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	5,000	5,000	-
	사회적금융기관 등 지원	370	370	-
	채권관리비	100	100	-
재무활동		31,352	45,905	14,553 (46.4%)
	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	20,000	20,000	-
	여유자금 예치	11,352	25,905	14,553
행정운영경비		10	10	-
	기금관리비	10	10	-

* 당초 지출계획액은 제315회 정례회 의결('22. 12월)을 받은 금액임

○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				
항 목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	항 목	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합 계	36,832	51,385	14,553	합 계		36,832	51,385	14,553
기금 융자금 회수 (이자 포함)	11,863	11,863	-	사 업 비	기금 융자금	5,000	5,000	-
					이차보전금	370	370	-
					채권관리비	100	100	-
공공예금 이자수입	247	247	-	재 무 활 동	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	20,000	20,000	-
예치금 회 수	24,722	39,275	14,553		예치금	11,352	25,905	14,553
					기본경비	10	10	-

Ⅲ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'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 145억 5,300만원을 '23회계연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에 반영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 정책사업 중 **재무활동**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¹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 - 행정안전부의 「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²⁾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%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,
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**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46.4%, 145억 5,3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2) 행정안전부, 「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('22. 7), p.296

〈표 3-1〉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당 초 (A)	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률 (D=C/A)
지 출 합 계	36,832	51,385	14,553	39.5
사 회 적 경 제 생 태 계 조 성	5,470	5,470	0	-
재 무 활 동	31,352	45,905	14,553	46.4
보 전 지 출	31,352	45,905	14,553	-
여 유 자 금 예 치	31,352	45,905	14,553	-
행 정 운 영 경 비	10	10	0	-

※ 자료근거 :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('23.10.16) 재구성

○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지난 6월, '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잉여자금 예치 총액이 당초 지출계획보다 증가하였음을 지적한 바³⁾ 있어, 이미 지난 6월부터 '2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

- 그럼에도 동 기금의 경우, '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'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금번 정례회에 같이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,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금번 정례회중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'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,

- '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변경안의 결과를 예단하여 작성한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동일한 회기에 제출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3) 예산결산특별위원회, 「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」 ('23. 6), p20